

시론



김 성 천

- 現)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사법학)
- 청소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

지난 9월 14일 밤 9시 경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범인 전주환(31세, 남성)이 28세의 여성 역무원을 칼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화장실 구조를 잘 알고 있던 피해여성이 직접 비상벨을 눌러 도움을 요청한 후 1분만에 지하철역 직원과 사회복지요원이 달려와 시민과 함께 곧바로 전씨를 제압하였다. 119 구급대는 신고 9분만에 현장에 도착해서 피해여성을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수술 중에 사망하고 말았다.

전씨는 서울교통공사 입사동기인 피해자를 2019년 11월부터 거의 3년 동안 사귀자고 종용하며 집요한 스토킹을 해왔다. 그동안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통화 시도와 문자 전송의 횟수는 370여 차례에 달한다. 전씨는 역 구내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 짓도 하였다. 피해여성도 그 카메라에 의해 불법촬영을 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가해자는 피해여성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불법촬영한 사진을 배포하겠다는 협박도 하였다고 한다. 전씨는 범죄행위를 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적 가책을 느끼지 않는 부류의 사람으로 보인다. 이러한 공감 제로 현상은 사이코패스(반사회성 성격장애) 증상에 해당한다.

스토킹과 협박에 견디다 못한 피해자는 작년 10월에 불법촬영 혐의로 전씨를 고소했다. 이에 전씨가 위험인물이라고 판단한 경찰이 고소를 접수한 다음 날 그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하였다. 이유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

는 것이었다. 불법촬영에 대한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었고,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직원이었으니 도망갈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이 장면에서 몇 가지 아쉬움이 느껴진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해서 심각한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많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구속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한 제2항에서 말하는 재범 위험성이 존재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능하다. 다만 예상되는 형량이 높을수록 도주의 우려가 높아진다고 보는 식으로 우회적 판단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최초에 스토킹이 아닌 불법촬영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졌고 경찰이 그 범죄혐의만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입장에서 보면 불법촬영 역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촬영행위를 통해서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구속까지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을 만하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나서 피해자 조사를 하면서 즉시 스토킹 사건임을 알았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촬영 혐의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점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다. 당시 사건이 단순 불법촬영이 아니라 스토킹도 동반되고 있어서 특정 피해 여성에 대한 위해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부각시켰더라면 영장이 발부되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나아가 영장 청구는 검사가 하는 일인데 그 단계에서도 스토킹 혐의를 추

가하는 등 범죄혐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아쉽게 한다.

피해여성은 올해 초에 다시 전씨를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고 전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다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다. 물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영장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불법촬영에 스토킹 혐의가 추가된 복합적인 상태에서도 구속 여부에 대해서 반드시 같은 결론이 나올 일은 아니다. 게다가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이후에 그 사실을 경찰이 서울교통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직위가 해제된 상태이었다.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면직될 것이므로 확실한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기에는 살짝 어려운 상황으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경찰이 다시 구속영장 신청을 했더라면 영장이 발부되어 살인사건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해본다.

불구속 상태에서 전씨는 검찰 기소 이후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면서 지속적인 연락을 하였다고 한다. 불법촬영과 스토킹 사건은 병합되었고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불법촬영이 7년 이하, 스토킹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범죄이므로 징역 10년까지가 경합범 가중이 가능한 상한선이다.)에서 이번 사건 바로 다음날 법원의 판결 선고가 예정되어 있었다.

스토킹 범죄는 대단히 위험하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너무 심하게 ‘사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말이 사랑이지 실상은 파괴적인 집착에 불과하다. 모든 것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방을 차지하고 말겠다는 왜곡된 애착과 상대방으로부터 궁극적으

로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시작된다. 이들은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서 폭력도 불사한다. 목표가 달성된다면 수단은 크게 문제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 일부의 잘못된 공감대도 스토킹 범죄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있고 나서 서울시의원 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여러 가지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부모의 심정은 어땠겠는가.’라는 발언을 하였다.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 가해자의 행위동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대놓고 말한다는 것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대응이 그만큼 힘들다는 점을 보여주는 일이다.

스토커 입장에서는 정말 지극정성을 다하는데 상대방 여성이 싫다고 하니 무척 괴로운 일이다. 그래서 더욱 극단적인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랑’을 표현하게 된다. 폭력 행사도 상대방을 좋아하기에 하는 일일 뿐인데 피해자가 그걸 가지고 신고하게 되면 스토킹은 격한 분노에 휩싸인다. 따라서 신고 당한 가해자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나면 반드시 보복에 나서기 마련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토킹, 데이트 폭력 그리고 가정폭력 등 세 가지가 공통점을 보인다. 동반관계의 형성과 유지에 집착하면서 편집증(Paranoia) 상태에 빠져서 상대방을 자신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이다.

스토킹이 극도로 위험한 근본적인 원인은 가해자들의 행위동기가 애착불안에 있다는 점이다. 애착불안은 ‘사랑의 열정’과 ‘왜곡된 사랑’을 구별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그 두 가지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피해망상에 빠져드는 경계성 성격장애(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에 속한다. 애착불안에 빠진 사람들은 진지하게 애정을 표현하지 못하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에 계

속 상대방에게 접근하려고 애쓴다. 그러다가 도저히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상대방에게서 버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상대방을 살해하게 되는 것이다. 살인을 통해서 상대방을 독점한다는 목표도 동시에 달성되기에 가해자는 현실세계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루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스토킹 살인자는 보통 현장에서 도주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21년 3월에 있었던 노원구 중계동 세 모녀 살해사건의 범인 김태현은 택배기사로 위장한 뒤에 스토킹 하던 여성 A씨의 집으로 가서 집에 있던 A씨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5시간 후 귀가하는 A씨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다시 1시간 후에 귀가하는 A씨를 살해하고는 스스로 자해를 시도하고 집안에 그대로 누워 있다가 체포되었다. 김씨는 범행도구인 칼을 준비하고 PC방에 가서 CCTV 영상을 검색하여 A씨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한 범행준비를 한 바 있다. 신당역 사건의 전씨는 범행도구인 칼과 샤워캡을 준비하고 범행장소에서 21개역 떨어진 지하철 6호선 구산역 역무실로 가서 다른 역의 역무원이라고 하고 내부망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일정을 조회하는 등 면밀한 범행계획을 세웠다. 전씨가 혹시 있을지 모를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휴대폰에 GPS 교란용 앱을 깔았고, 들키지 않고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기 위해서 샤워캡을 쓰기는 하였지만 범행 이후에 도주를 시도하지는 않았다. 모든 준비는 피해여성 살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도주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스토킹 범죄가 이처럼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은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및 가정폭력 등 세 가지 유형이 모두

마찬가지이다. 모두 애착불안이 원인인데 대부분 폭력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범죄 피해를 당하는 여성들은 처음에는 일단 참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다가 참으면 안 된다는 조언이 빗발치고 나서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는데 그 시점에 발생한 폭행이나 상해의 정도를 보면 그 자체로는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가해자 구속과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가 불가능하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마치고 가해자를 보내주는데 그러면 반드시 보복을 하면서 폭력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 심할 경우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이다.

스토킹 범죄를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2021년 4월 20일에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작년 10월 21일에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수사기관에서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가 확인이 되면 사법경찰관이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법 제4조). 긴급응급조치의 내용은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통신수단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이다. 이에 더불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시키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법 제9조).

2021년 11월 7일에 범인 김병찬이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 하다가 살해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였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가 강구되었으나 살인을 막지는 못하였다. 피해여성은 모두 여섯 차례 경찰에 스토킹 신고를 하였고 무서워서 임시숙소로 거처를 옮겼다. 그러자 김씨는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 접근금지 조치를 부과하였고 피해여성은 경찰이 제공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녔다. 그러다가 피해자가

임시숙소에서 나와서 자신의 오피스텔로 갔는데 그곳에서 기다리던 김씨가 칼로 찔려 피해여성을 살해하였다. 피해자는 집 앞에서 김씨를 발견하고 즉시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구조신호를 보냈지만,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뒤이었다.

법원의 접근금지 조치를 위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만 스토킹을 가둬두지 않는 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물리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스마트워치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적어도 몇 분은 소요되는 출동시간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서 피해여성이 가해자의 접근을 인지하고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다.

신당역 사건 이후에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그 대상이 이미 스토킹 범죄로 형을 선고받았던 사람으로 제한되어 있다.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려면 보복의 위험성이 있는 가해자의 발을 묶어 두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이미 그 일로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 후 출소한 다음에야 비로소 족쇄를 채운다는 것은 너무 늦는 일이다. 사람을 죽여서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뒤에 전자발찌를 채우기보다는 스토킹 폭력의 위험성이 상승하고 있을 때 선제적으로 전자적 감시의 대상이 되도록 조치함이 마땅하다. 신고에 따른 보복범죄는 점점 폭력성이 증가해 나가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일단 위험이 감지되면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가해자의 위치를 추적하여 피해자가 적시에 피할 수 있게 하는 정도의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상심리로 인한 범죄의 위험이 사회전반에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